##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. 국민의힘 강북 제1선거구 이종환 의원입니다.
- 이렇게 선배·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데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그럼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간략하 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최근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 있습니다.
- 이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서울시가 산하 체육회인 서울특별시체육회,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 록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무쪼

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○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